

2026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안)



2026. 2.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목 차

I. 개 요	1
II. 추진방향	3
III. 추진계획	5
1. 일반사항	5
2. 건강검진	6
3. 별도의 검사	13
4. 신체의 발달상황	15
5. 건강조사	15
IV. 행정사항	16
V. 부 록	17
1. 제출서식	18
2. 참고자료	23

2026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실시계획(안)

경기도교육청

I. 개요

1.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변경내용																			
학생 건강검사	<p>○ 구강검사 실시방법</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구강검사</th> </tr> </thead> <tbody> <tr> <td>방법</td> <td>학교장이 2개 이상의 검진기관 선정 및 계약</td> </tr> </tbody> </table>	구분	구강검사	방법	학교장이 2개 이상의 검진기관 선정 및 계약	<p>○ 구강검사 실시방법</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구강검사</th> </tr> </thead> <tbody> <tr> <td>방법</td> <td>(초등) 경기도치과의사회 지정 검진기관 이용 시 학교별 선정 및 계약절차 생략 가능(※ 단, 타 사·도 소재 치과 이용 불가)</td> </tr> </tbody> </table>	구분	구강검사	방법	(초등) 경기도치과의사회 지정 검진기관 이용 시 학교별 선정 및 계약절차 생략 가능(※ 단, 타 사·도 소재 치과 이용 불가)											
	구분	구강검사																			
	방법	학교장이 2개 이상의 검진기관 선정 및 계약																			
구분	구강검사																				
방법	(초등) 경기도치과의사회 지정 검진기관 이용 시 학교별 선정 및 계약절차 생략 가능(※ 단, 타 사·도 소재 치과 이용 불가)																				
<p>○ 별도검사 대상 및 실시방법</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p.14</td> <td>구분</td> <td>소변검사</td> </tr> <tr> <td>검진 항목</td> <td>[2종] 요잠혈, 요단백</td> </tr> <tr> <td rowspan="2">p.14</td> <td>구분</td> <td>결핵검사</td> </tr> <tr> <td>행정 사항</td> <td>학교별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체결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준수</td> </tr> </table>	p.14	구분	소변검사	검진 항목	[2종] 요잠혈, 요단백	p.14	구분	결핵검사	행정 사항	학교별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체결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준수	<p>○ 별도검사 대상 및 실시방법</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p.14</td> <td>구분</td> <td>소변검사</td> </tr> <tr> <td>검진 항목</td> <td>[4종] 요잠혈, 요단백, 요당, pH</td> </tr> <tr> <td rowspan="2">p.14</td> <td>구분</td> <td>결핵검사</td> </tr> <tr> <td>행정 사항</td> <td>대한결핵협회 경기지부와 결핵검사를 실시할 경우 도교육청의 일괄 위탁계약에 따라 단위 학교별 별도 계약 불필요 (※도교육청-협회 간 일괄 위탁계약 완료)</td> </tr> </table>	p.14	구분	소변검사	검진 항목	[4종] 요잠혈, 요단백, 요당, pH	p.14	구분	결핵검사	행정 사항	대한결핵협회 경기지부와 결핵검사를 실시할 경우 도교육청의 일괄 위탁계약에 따라 단위 학교별 별도 계약 불필요 (※도교육청-협회 간 일괄 위탁계약 완료)
p.14		구분	소변검사																		
	검진 항목	[2종] 요잠혈, 요단백																			
p.14	구분	결핵검사																			
	행정 사항	학교별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체결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준수																			
p.14	구분	소변검사																			
	검진 항목	[4종] 요잠혈, 요단백, 요당, pH																			
p.14	구분	결핵검사																			
	행정 사항	대한결핵협회 경기지부와 결핵검사를 실시할 경우 도교육청의 일괄 위탁계약에 따라 단위 학교별 별도 계약 불필요 (※도교육청-협회 간 일괄 위탁계약 완료)																			
○ 학교보건법 개정		<p>○ 학교보건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장 주관으로 실시 중인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국정과제 85-2) -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생애 주기 건강검진 결과 관리 체계 구축, 학생·학부모의 건강검진기관 선택권 확대, 학교 업무 경감(27년 전면시행 예정) -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25.12.10. 법사위 의결) 																			

2. 목 적

- 가.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나. 개선이 필요한 건강행태 또는 건강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3. 근 거

- 가. 「학교보건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
- 나.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2025. 3. 10.시행)
- 다.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 라.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교육부 고시, 2022.12.26. 일부개정)
-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 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 사.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호, 2026.1.7.시행)
- 아.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8837호, 2026. 1. 15. 일부개정)

4. 현 황

- 가. 학생 건강문제 조기발견과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건강검사 실시 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고 충분한 기간 확보하여 안전하게 연내 시행 필요
- 나. 학교에서 검진기관 선정 시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검진 기관만을 선정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 선택의 폭을 제한
 - *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검진기관 방문 일자를 단기간 지정하여 학생, 학부모의 불편감 초래, 부적절한 인력 채용으로 인한 출장검진기관의 재검진 사례 발생
- 라.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위한 「학교보건법」개정('25.12.10. 법사위 의결)

II. 추진방향

1. 학생 건강검사제도 운영

가. 각급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 학교장은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 당해 학교 건강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환류 실시(「학교보건법」제7조의2제3항)

※ <학교건강검사규칙> 건강검진 일부항목 삭제 및 추가, 문진표와 건강조사서 분리, 비만도 산출은 '체질량지수' 기준 산출방식으로 일원화(2020. 3월)

※ <참고> 초등학생 구강검진은 전체 학년이 대상

나.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학생·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선정 추진

-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연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 추진

※ 단,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1개의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가능(「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4항)

다.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 국가차원의 학생건강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운영(2024년~2026년, 3년단위)
- 표본학교 건강검사는 3월부터 9월 중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나이스(NEIS)를 통해 제출

2.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가.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보건교육 실시
- 건강검진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의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3. 학생건강검진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가.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초·중·고등학교)에서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을 하고, 필요시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검진의 문제점을 발견 등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질 관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방안 강구

나. 학교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지도·점검 철저

※ **초등학생 구강검진 관련 참고사항**(법률자문가 유권해석 결과)

- ◇ 「학교보건법」제7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르면(2007.12.14 개정) 초등학생 구강검진의 방법(출장검진과 내원검진 등 방법결정 및 검진비용 등)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임
 - ▶ 따라서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세부 방법은 구강검진을 제외한 일반검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강검진은 법률에서 정한 대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를 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검진기관으로 승인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는 검진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학교건강검사에서의 '구강검진'은 미실시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근거)자료 첨부
 - 「학교보건법」제7조제4항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이용 가능한 검진기관 부재 등)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지역 내에 검진기관의 부재 및 인근지역 이동 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구강관리실 등에서 학생 구강진료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구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음
- ※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학교의 주의 요망

Ⅲ. 추진계획

1. 일반사항

가. 실시계획의 수립

- 학교장은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 까지 수립, 연도 중 실시 완료

나. 실시내용

검사항목	대상학년	실시기관	실시방법
건강검진	초1,4/중1/고1 (건강검진)	학교 지정 검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방문 개별검진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에 의함 • 비용: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 기준」 수가 적용 *학년별 검사항목 및 비만여부에 따라 검사비용 다름
	초2,3,5,6 (구강검진)	학교 지정 검진기관 또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지정 경기도 내 검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방문 개별검진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에 의함 • 비용: 1인당 8,300원
별도검사	초2,3,5,6 /중고 2,3 (시력검사)	학교장재량 위탁(기관 등)· 학교자체(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미실시 여부를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 • 외부전문인력(기관) 위탁 등 • 공인시력표를 활용하여 좌, 우안 각각 측정
	초2,3,5,6 /중고 2,3 (소변검사)	학교지정기관 또는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기관 학교출장검사 또는 기관방문검사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에 의함 • 비용: 950원
	고2,3 (결핵검사)	학교지정기관 또는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기관 학교출장검사 또는 기관방문검사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에 의함 • 비용: 4,250원
신체발달 상황	초1,4/중1/고1	검진기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 몸무게 측정 후 비만도(체질량지수) 산출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에 의함
	초2,3,5,6/ 중2,3/고2,3	학교자체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기 말까지 실시, 8월말까지 NEIS입력/보고 * 건강검진 대상학년은 검진 계약 기간과 측정기한이 다를 경우 학교에서 자체 측정해야 함
건강조사	초1,4/중1/고1	학교자체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 학교별 건강조사 실시 [별지 제1호의2]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 참고 • 1학기 말까지 실시
	초2,3,5,6 중2,3/고2,3		

2. 학생 건강검진

가. 검진시기: 3월 ~ 11월

- 원활한 건강검진 실시 및 통계를 위해 가능한 **11월 말까지** 건강검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단, 건강검사 표본학교의 건강검진 기간은 별도 안내)

나. 검진대상: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검진기관

검사항목	대 상 학 년	실시기관	실시방법	검진비용	비 고 (관련근거)
건강검진	초1,4/중1/고1 (건강검진)	학교지정 검진기관	병원방문 검진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 기준」 수가 적용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 규칙」 제3조
	초2,3,5,6 (구강검진)	학교지정 검진기관 또는 경기도치과의 사회 지정 경기도 내 검진기관	병원방문 검진	8,300원 (교육감결정사항)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수가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 규칙」 제3조 · 경기도치과 의사회 (031)-248-6621

1) 구강검진(초2,3,5,6) 수가는 2018년부터 고시 수가 100% 반영

2) 세부 운영 방향

가. 초등학교

- 「학교보건법」제7조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방식으로 실시 가능

(1) 학교장 검진기관 선정

- 「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의2에 따라 학교장이 2개 이상의 검진기관 지정하여 실시

(2) 경기도치과의사회 협력 검진(검진기관 선정 및 계약 생략가능)

- 경기도치과의사회와 협력하여 지역제한 없이 경기도치과의사회 지정 구강검진기관에서 검진 가능(단, 서울 등 타시·도는 불가)

※ 구강검진기관 검색: 경기도치과의사회(<https://www.ggda.kr/?home>) → [학생구강검진 치과 찾기]

- 경기도치과의사회 지정 검진기관 이용 시 학교에서는 검진기관 선정 및 계약 생략

- (사전조사) 원활한 검진 운영을 위해 참여학교 및 학년별 학생수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실시 예정

- (비용청구) 경기도치과의사회는 검진 완료 후 청구서[참고자료 2]와 결과 파일을 학교로 송부하며, 학교는 확인 후 11월 중 검진비를 송금함

- (검진시기) 원활한 검진 진행 및 특정 시기 집중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학년별

권장기간 운영함

구분	권장 검진 기간	비고
1학년	5. 4.(월)~5. 16.(토)	
2학년	5. 18.(월)~5. 30.(토)	
3학년	6. 1.(월)~6. 13.(토)	
4학년	6. 15.(월)~6. 27.(토)	경기도청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자는 기간 관계없이 상시 가능
5학년	6. 29.(월)~7. 11.(토)	
6학년	7. 13.(월)~7. 25.(토)	

※ 위 기간은 권장 사항이며, 학생 사정에 따라 권장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검진 가능

나. 중·고등학교

- 「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의2에 따라 학교장이 2개 이상의 검진기관 지정하여 실시
- 인근 검진기관이 부족한 경우, 경기도치과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인근 검진가능 병·의원을 검색하여 계약 가능

3) 경기도청 「2026년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참여 기관에서 검진 가능

- 대상: 도내 초4학년 학생 전체(특수, 대안학교, 학교밖 청소년 포함)
- 예산: 학생 1인당 48,000원, 특수학교 학생 63,000원(도청 예산 100% 실시)
- 사업 시행: 수원시 등 30개 시·군(고양시 미참여)
- 2026년부터 특수학교 이동진료 미지원
- * 초 4학년 구강검진 예산 수립한 경우는 학교자체 구강보건사업 등으로 변경 활용
- 구강검진 서비스 :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포함
- 경기도청의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별도 안내

※ 관련 규정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 ② 학교의 장은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이하 생략>

라. 건강검진 비용 : 학교 회계(학교 기본운영비)

- 1) 근거 : 2026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수가 적용
- 2) 학년별 1인당 일반검진비용[참고자료 3~4]

학년별	초등학교			중 1학년		고 1학년			
	1학년	4학년				정상	비만	남학생	
		정상	비만	정상	비만			정상	비만
		정상	비만						
검사비 (단위:원)	19,060	19,060	39,540	27,360~ 29,100	47,840~ 49,580	27,360~ 29,100	47,840~ 49,580	28,630~ 30,370	49,110~ 50,850

※ **비만** : 초4학년 이상, 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95이상 학생에 한하여 검사항목 추가
(허리둘레, HDL/LDL Cholesterol, 중성지방 항목 추가)

※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은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중성지방 측정 후 계산값 산출(검진비용 제외)

3) 학년별 1인당 구강검진 비용(학교 기본운영비)

- 경기도치과의사회 지정 검진기관 이용 시, 학교는 경기도치과의사회로부터 비용 청구서[참고자료 2]를 받은 후, 실제 검진 인원을 확인하여 11월 중 해당 계좌로 직접 송금

마. 건강검진 실시방법

1) 건강검진 절차 등

가) 학교장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 다만 검진기관 부재 등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장의 승인**(교육지원청)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음(학교건강검사규칙 참조)

나)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단,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1개 검진기관만 선정하여 출장검진 가능)

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제4항 1~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 중 부득이하게 1개의 검진기관 선정 또는 출장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는 학생 건강검진 실시기관 선정 완화 승인기준 [서식 4호]를 참고하여 **각 급 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승인 후 검진실시**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24호 개정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2023.8.7.시행)

라) 완화신청 승인 유의사항

- 기준: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이 부재하거나 접근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승인
- 단순 선호도, 거리 편의성, 학부모 요청, 학사 운영의 편의 도모 등은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관내 검진기관이 있으나 병원 사정으로 인해 출장검진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는 '기관 부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완화 신청서[서식 4]를 제출하여야함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 면, 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 승인 불필요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 승인 불필요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등)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 교육지원청 교육장 승인 필요

마) 검진기관은 문진표(규칙 [별지 서식 1의2, 1의3, 1의4] 양식)를 검진대상자에게 작성·제출하게 한 후, 신체발달상황과 건강검진을 실시

바) 검진기관은 검진실시 후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2) 검진기관 선정과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선정기준

- (1) 학교장은 검진기관의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 중 시설·설비, 인력과 전산처리능력 등을 확인하여 정확성, 편리성을 갖춘 기관 선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별표 1, 별표 4, 별표 5와 관련 인력, 시설,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검진기관 선정

1. 검진기관 검색 및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nhis.or.kr>) → [건강모어]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찾기]
2. 검진기관 검색 시 유의사항
· (일반검진) 검색 조건 중 [일반] 체크 후 검색
· (구강검진) 검색 조건 중 [구강] 체크 후 검색
* 사이트 내 [학생탐은 시범사업지역(세종, 원주, 횡성) 전용]이므로, 경기도는 [일반] 또는 [구강탐 활용]
· 관내 검진기관이 존재하나 병원 측 사정(검진 거부, 예약 불가 등)으로 출장검진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는 '기관 부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완화 승인 요청서[서식 4]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검진기관에 구강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별도의 구강검진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의과검진기관과 구강검진기관을 각각 2개 이상 선정

- 검진기관은 학생들이 최대한 분산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기관을 선정 운영

나) 계약체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계약

- (2) 검진준비, 검진항목, 검진비용부담, 검진결과 처리방법 등 검진실시에 따른 의료 사고의 책임한계, 손해배상 이행 등 명기
- (3) 학생 건강검진 시 필요한 계약 서류의 간소화로 검진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민원 해소
 -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예시문(안) [참고자료 1]
- (4) 학생건강검진기관은 조달청 미등록업체, 영세업체(병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계약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방식 적용(계약) 가능
- (5) 교육지원청은 학교 건강검사의 적법 운영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철저
 - 학교의 장과 검진기관의 장과의 계약 및 대금지급 규정준수 여부(위임 불가)
 - 학교장의 검진기관 선정 완화 요청 시 신속한 완화 승인 등의 행정처리
- (6) 개인정보 처리 위탁관리 준수사항[참고자료 6]
 - 학생건강검사 및 별도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서를 반드시 문서로 체결해야함
 - [사업시작]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체결, 학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 내용 게시(위탁업무 내용, 위탁업체명, 연락처 등)
 - [사업 중] 학교 단위 검진(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또는 검진기관 자체 교육이수결과 확인
 - * 교육사이트 안내: 개인정보배움터(edu.privacy.go.kr)-개인정보처리자-온라인교육 (개인수강)-수료증 발급
 - [사업종료] 개인정보 파기 약속서 징구
 -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출장검진 등으로 학교에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체결함
 - * 단, 대한결핵협회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결핵검사 관련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학교에서는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음

다) 학교 유의사항

- (1) 일반검진기관에서 구강검진기관을 계약한 후 학교에서 일반검진기관만 계약하여 구강검진까지 실시하는 사례 불가
- (2) 검진기관 선정, 실시 등의 이유로 어떤 혜택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건강검사의 부실을 방지 (예시: 장학금 지급 혜택, 교직원 무료 건강검진 쿠폰 지급 등)

- (3)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항목과 방법 준수, 검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사고 예방 철저
- (4) 학생건강검진 계획, 검진대상자 명부, 건강검진 판정기준, 점검계획 등 검진에 필요한 사항을 검진기간으로 통보
- (5)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학생과 의사와의 충분한 진찰 및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필요시 검진기관 점검 실시
- (6) 가급적 학생들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학교 인근 여러 검진기관과 계약하여 학생들의 개별 방문 검진 편리성 도모
- (7) 비만학생은 검진 당일 공복 상태로 기관에 방문하도록 안내하여 혈액검사를 위해 재 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보제공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의 **비만도** 기준 확인, 2017년 소아 청소년 성장도표의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백분위수 95이상

- (8) 각종 대회 출전, 기타 등의 사유로 건강검진 누락 학생이 없도록 조치

라) 검진기관 준수사항

- (1) 검진기관은 개정된 문진표(초/중 고등학교용), 구강검진문진표 및 검진 안내서를 기관에 비치하고, 검진 당일 개인별 문진표를 작성·제출
- (2) 검진기관은 학교장과 협의, 검진당일 진찰 및 각종 검사 실시 전에 학생에게 주의사항 등 안내
- (3) 학생, 학부모 및 학교의 편의를 위해 주중 및 방학이나 토요일, 공휴일에도 검진 실시 방안을 학교와 협의토록 하고, 특정일에 학생 및 학부모가 집중되는 경우 추가 안내 인원 배치 및 안전 통제 실시
- (4)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학년별 검사항목을 누락되지 않도록(특히, 비만학생) 검진 실시

※ 검진기관은 제시된 학생건강검진 검사항목을 누락하거나 그 이외에 개인 부담의 추가검진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검사항목 사전 확인)

- (5) 검진 인력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 (6) 학교장이 검진 인력 및 검진 장비 검증 등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요구 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함
- (7) 건강검진결과 시급히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8) 학생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및 검진 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준수)

(9) 검진기관에서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을 검진기관으로 이송금지(의료법 제27조 제3항)

3) 검진결과 처리

가) 결과 기록과 판정

-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참고

나) 결과통보

(1) 검진기관

-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규칙 서식 1의5),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규칙 서식 1의6)를 각각 작성하여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 학교장에게 통보
- 건강검진 결과 긴급히 정밀검진을 요하는 학생은 학교장 또는 학부모가 조기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즉시 통보
- 학생의 인적사항과 검진결과 등은 철저히 개인 비밀보장

(2) 학교장

- 검진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NEIS)에 기록,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검진 통계표를 작성,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
- 건강검진 실시 대상이 아닌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 (신체발달상황, 별도의 검사 등)도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
- 검진기관이 통보한 건강검사 결과 원본은 최소 당해년도 보존 후 폐기하며 단, 학교장이 건강검사 결과 지속적인 관리를 판단한 경우(요양호자 등) 필요시 보관 가능하고, 학생 전출 시 이관되지 않음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관리지침」 제14조 참고)
-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정밀검진, 조기치료 등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추가 검사 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
- 검진결과와 관련하여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특히, 건강이상자에 대하여는 상담 활동 등 지도대책 강구
- 건강검진 대상 학생이 불가피한 사유(장기결석자, 전입생 등)로 건강검진 미실시한 경우, 다음 학년도에 우선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조치
- 건강검진결과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이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당해 연도 내에 검진을 받도록 조치

다) 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

- (1) 검진기관이 검진비용 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해 검진기관의 종사자가 검진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고 그 청구내용 및 금액은 대표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위임 불가)

(2) 학교장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 청구가 있을 때에는 검진비용 청구서의 각 항목 실시 인원과 명단을 확인한 후 접수처리

4) 기타 유의사항

- 가)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검진기관에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을 하고, 적극적인 조치방안 강구
- 나) 학교와 검진기관이 사전예약제를 도입한 경우, 학부모의 사정으로 예약기간이 지나서 검진기관을 방문하였으나 해당학교의 검진기간 경과 이유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3. 학생 별도의 검사

가.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는 별도의 검사에 소요예산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검진기관과의 일정을 협의 후 시행

나. 검사 항목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별도의 검사)

검사 항목	대상학년	실시 기관	검사 방법	검사비	비고
시력	초2,3,5,6/ 중2,3/ 고2,3	· 학교장 재량 · 위탁(기관 등) · 학교자체(교직원)	· 외부전문인력(기관) 위탁 등 · 공인시력표를 활용하여 좌, 우안 각각 측정 · 안경 등으로 시력교정한 경우 교정시력을 검사	학교회계	학교별 자체 일정
소변	초2,3,5,6/ 중2,3/ 고2,3	· 학교장 지정기관 ·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지부	· 요컵 또는 시험관 등 이용, 신선한 요 채취 후 시험지 사용 측정 (요단백, 요잠혈, 요당, pH 검사)	1인당 950원 학교회계	· 학교지정(계약)기관 ·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지부(남북부통합) (031)-273-9501
결핵	고2,3	· 학교장 지정기관 ·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 상의속옷 탈의 후 촬영 ·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1인당 4,250원 학교회계	· 학교지정(계약)기관 ·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031)-245-8674

※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시력검사 의무 검진을 폐지하며, 실시 여부는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

다. 실시대상 :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제외)

* 올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는 별도의 검사 “제외”

라. 실시기간 : 3월~12월 중 실시 완료

마. 검사기관 선정 시 유의사항

- 1) 학교장이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단, 대한결핵협회, 한국학교보건협회를 통한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방식과 동일 시행
- 2) 일반검진기관을 통해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계약방법, 비용지급방식은 학교 상황에 따라 간소화하여 시행
- 3) 결핵검사(4,250원), 소변검사(950원)는 건강검진 수가와 구분하여 별도 비용으로 지급할 것을 권장
 - 소변검사: 미수검학생 추가검사를 희망할 경우,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지부로 문의

바. 항목별 실시 방법

- 1) 시력검사 : 실시여부를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함
 - 실 시: 위탁 검사 또는 교직원이 실시하며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
 - * 검사비는 학교회계예산으로 사용함
- 2) 소변 및 결핵검사 : 검사기관이 학교별 순회 출장검사
 - 일정조정은 실시기관과 해당 학교가 직접 협의 후 진행
 - 검사대상확인 및 결과 통보를 위한 명단(학년, 반, 이름)을 검진기관에 제공
 - 검사 당일 및 재검사 검사대상자 확인, 장소제공 등 협조/지원
 - 결핵검사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상의 속옷 탈의, 금속류 및 장신구 제거하고 검사용 가운을 환복한 후 흉부 X선을 촬영하도록 안내 및 확인
 - 소변검사는 요단백, 요잠혈, 요당, pH 4종에 대해 임상병리사가 검사 진행
 - *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와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결핵검사 관련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학교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음
 - * 단, 출장검진 등으로 학생의 개인정보를 제3의 의료기관(결핵협회 이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위탁관리 절차 준수

사. 검사 결과 :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서식1] 작성 제출

아. 기타 유의사항

- 1) 검사의 필요성, 주의사항 안내와 사전·사후 보건교육 실시
 - 검사결과 유소견자는 정밀 검사 및 진료가 연계되도록 조치하고, 시력은 교정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와 시력관리 보건교육 실시
- 2) 학교장은 별도검사의 실시결과 확인 및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 관리
- 3) 건강검사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조치시행, 가정과의 연계관리
 - ※ 결핵으로 판명된 학생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 유선 보고 후 NEIS 입력, 역학조사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별도 서면보고(지정양식 참고)

4. 신체의 발달상황

가. 검사기한 : 1학기 말까지

나. 검사대상 : 초1학년~고3학년

* 건강검진 대상학년(초1·4, 중1, 고1학년)의 경우 검진계약 기간과 검사 기간이 상이한 경우 학교에서 별도 측정해야 함

다. 검사항목 및 방법

1) 항목 : 키(cm), 몸무게(kg), 비만도

2) 방법 : [별표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측정

* 비만도: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확인

라. 검사자 : 교직원

마. 결과처리 및 제출기한 : 8월말까지 나이스 입력/전송 보고

1)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체중이상 학생(저체중/과체중/비만) 대상 학교별 맞춤형 건강관리 대책마련

2) 담임교사, 학부모 연계 지도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중·고등학생 비만을 지속 증가 추세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 국	11.1	12.1	13.5	12.1	12.0	12.5	12.6
경 기	9.7	10.7	12.3	10.0	10.7	10.6	11.5

*비만기준: 체질량지수(BMI) 95백분위수 이상인 학생의 비율(%)

5. 건강조사

가. 조사기한 : 1학기 말까지

나. 조사대상 : 초1학년~고3학년(건강검진 문진표로 대체 불가, 별도 실시)

다. 조사항목 및 내용

1)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2항 별표1의2(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을 참고하여 학교자체 제작한 건강조사표 활용

- 2026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 건강조사표(참고자료 5) 참조

2) 건강조사 양식을 학교에서 직접 인쇄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설문 내용 중 학부모의 도움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가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도

라. 조사자: 당해 학교 교직원

마. 결과처리

- 1) 상반기 중 조사결과를 통계처리 및 분석(학년별, 성별, 연도별 비교)하여 학생 건강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
- 2) 건강 요양호자 학생에 대한 학생기록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관리(기록지에는 개별 전화번호, 지정병원·투약정보 등 의료정보, 기타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며 개인정보 보안 유지

IV. 행정사항

1.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학교장은 해당 학교 검진기관 지도·점검, 검진기관 만족도 조사 실시
- 교육장은 관내학교, 검진기관 현장지도 및 점검실시
(※ 민원발생기관 지도·점검 필수)
- 점검 내용: 검진기관의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문진표, 결과통보서, 검진 안내서, 검진장비의 검사성적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검진방법 및 진행의 적절성 여부** 등
- 건강검진비 허위·이중 청구 등 부당청구 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해당 검진비의 환수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강력 조치
- 검진으로 인한 결석·조퇴·지각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단, 학사 일정 및 학교별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최종 결정)

2. 제출 목록

보고 사항	학교(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교육 지원청	서식
1.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보고기한 및 방법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정	2026. 11. 30.까지 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보고	서식1
2.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보고기한 및 방법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정	2026. 8. 31.까지 나이스 보고	서식2
3. 학생건강검사 검진기관 선정 현황 파악	보고기한 및 방법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정	2026. 4. 24. 까지 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보고	서식3
4. 학생건강검진 선정원화 승인요청서	초, 중, 고, 각종학교 → 교육지원청(기한 및 방법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정) *경기도교육청 행정 권한 위임 조례 개정(2023.8.7.)에 따라 고등학교도 해당 모든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승인 요청		서식4

V. 부 록

□ 제출서식

1.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서식 1】-----	18
2. 학생 신체의 발달 통계표【서식 2】-----	19
3. 학생건강검사 검진기관 선정 현황 파악【서식 3】-----	20
4. 학생 건강검진기관 선정 완화 승인 요청서 및 승인기준【서식 4】-----	21

□ 참고자료

1. 학생 건강검사 승낙서 예시문 【참고자료 1】-----	23
2. 학생 구강검진 비용 청구서 【참고자료 2】-----	29
3. 2026년 학생 건강검사 고시수가 【참고자료 3】-----	30
4. 2026년 학생 건강검사 단가표 【참고자료 4】-----	31
5. 건강조사표 예시(2024-2026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참고자료 5】-----	32
6. 학생건강검사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참고자료 6】-----	34

□ 관련법규 검색【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제240호, 2021.6.30. 시행)
2.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25호, 2022.12.26. 시행)
3. 학생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교육부고시 제2022-37호, 2022.12.26. 시행)
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시행)

[서식 1]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엑셀서식보고

기관명 : 교육지원청

1.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 단위 : 교,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전체 학교수	건강검진 미 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남	여	
초	1							
초	4							
중	1							
고	1							
각종(중)	1							
특수	필요시 행 추가							

- 분교는 본교에 포함하여 작성, 필요시 행 추가, 각종학교는 서울삼육중학교, 계원예술중학교만 해당

2. 초등학교 구강검진 (단위 : 교, 명, 천원)

학년	전체 학교수	구강검진 미 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남	여	
2							
3							
5							
6							

- 분교는 본교에 포함 작성, 교육지원청 제출 시 특수학교는 미 실시, 필요시 행 추가

3. 별도검사 실시현황 (단위 : 명, 천원)

○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학교급	학년	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소요 비용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소요 비용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소요 비용
초	2									
초	3									
초	5									
초	6									
중	2									
중	3									
각종(중)	2									
각종(중)	3									
고	2									
고	3									

- 특수학교 미 실시, 필요시 행 추가, 각종학교는 서울삼육중학교, 계원예술중학교만 해당

[서식 2]

*나이스 보고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년 도
<input type="checkbox"/> 초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고

기관명 : _____

구 분		성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비만율	분 류	성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저체중 (%)	남자												
		여자												
	정 상 (%)	남자												
		여자												
	과체중 (%)	남자												
		여자												
	비 만 (%)	남자												
		여자												
	검사인원수 (명)	남자												
		여자												
		계												

※ 작성방법

1. 이 통계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1학기말까지 측정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키·몸무게 평균은 성별·학년별 수검자의 키·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계산한 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하 제3호에서 같습니다).
3. 비만율은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정상·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에는 해당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합니다.

학생건강검사 검진기관 선정 현황 파악

*엑셀서식보고

기관명: **교육지원청**

No	1. 담당자 정보					2. 학생건강검사 현황파악									
						일반검진					구강검진				
	지역명	학교명	학교급	담당자	연락처	일반검진 기관명	출장검진 여부	완화신청 여부	출장검진 사유	*기관 미선정 사유	구강검진 기관명	출장검진 여부	완화신청 여부	*기관 미선정 사유	출장검진 사유

*기관 미선정인 학교에는 검진 기관을 연결하도록 지원예정

학생 검진기관 선정 완화 승인 요청서(예시)

학 교 명				
검진대상학급수			대상학생수	
소재지	도로명 주소			담당자명
	지번 주소			직통 전화번호
구 분	요 청 내 용	요 청 사 유		
1개 검진기관 선정	1개 종합검진기관 선정 ()	1개 검진기관만 참여 () 검진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 기타 사유 ()		
	1개 의과검진기관 선정 ()			
	1개 구강검진기관 선정 ()			
출장검진기관 선정	출장 종합검진기관 선정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 검진대상 학년이 기숙사 생활 () 기타 사유 ()		

***요청내용과 사유에 해당항목에 각각 √ 표 기입**

승인기준을 확인하여 기타 요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설명기입

1개 검진기관 선정	
출장검진기관 선정	

- 초·중·고등학교·각종학교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학생 건강검진 실시기관 선정완화 승인기준

구 분	승 인 기 준
1개 검진기관 선정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 면, 동을 말한다)에서 1개의 검진기관만 학생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의 학교 2. 검진대상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3.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4. 기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장이 승인하는 경우
출장검진 기관 선정	1.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2. 검진대상 학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 3. 기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장이 승인하는 경우
건강검진 선정 완화 승인 제외 대상 (승인 요청서 제출 불필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할 수 있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장이 승인하는 경우

-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초·중·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승인요청서 제출(→교육장이 승인) 후 1개 기관 검진 또는 출장검진 실시
- ※ 지역내 학교 소재지가 같거나 인근에 있는 학교(병설교, 통합학교, 동일 법인학교 등)가 완화승인 요청 시 학교(급)별 지역 상황이 다르게 조사되어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 ※ 기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장이 승인하는 경우 : 지역의 의료기관(검진기관)실태 및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판단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절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 나.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 이외의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 계약보증금지급각서, 통합서약서, 통장사본 등

계 약 보 증 금 지 급 각 서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금 원정	(₩)
3. 계약보증금율	10%	
4. 계약보증금	금 원정	(₩)
5. 계약기간		

상기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 받은 바, 동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귀교 회계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동 법률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상 호

대 표

학교장 귀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안)

계약명			
학교명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전자계약 미체결 확인서	본 사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G2B) 미등록업체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2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3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각서 [] 보증서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7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40%;">항목</th> <th style="width: 20%;">수집·이용 목적</th> <th style="width: 40%;">보유·이용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td> <td>계약업무 진행</td> <td>계약체결일로부터 5년</td> </tr> </tbody> </table>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예 [] 아니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10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같음할 수 있음							

2026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참고자료 2]

학생구강검진 비용 청구서

청구처 (학교명)			
청구기관	경기도치과의사회	연락처	031) 248-6621
청 구 내 역			
건강검사항목	검진 단가 (A)	실시인원 (B)	청구금액 (A×B)
구강검진비	8,300원	명	원

본회에서는 귀 초등학교 1·2·3·5·6학년 구강검진 실시 학생의 검진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첨부된 계좌로 입금을 요청드립니다.

*첨부 : 경기도치과의사회 통장사본 1부.

청구일 : 2026 년 월 일

경 기 도 치 과 의 사 회
(직인)

2026년 건강검진 항목별 고시수가

(단위: 원)

순위	검 사 항 목	2025년 수가	2026년 수가	증 감
1	1차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척추측만증검사, 허리둘레(비만)포함	9,590	9,820	230
2	흉부방사선 직촬(14*14")	9,560	9,720	160
3	흉부방사선 직촬(14*17")	9,880	10,040	160
4	흉부방사선 CR/DR	8,170	8,300	130
5	흉부방사선 Full PACS	9,120	9,270	150
6	요검사(요단백,요잠혈)	920	940	20
7	혈액검사(혈색소)	1,250	1,270	20
8	혈액검사(공복혈당)	1,590	1,620	30
9	혈액검사(총콜레스테롤)	1,890	1,920	30
10	혈액검사(AST)	2,280	2,320	40
11	혈액검사(ALT)	2,230	2,260	30
12	혈액검사(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7,650	7,780	130
13	혈액검사(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7,680	7,800	120
14	혈액검사(중성지방)	4,510	4,580	70
15	(구강검진)상담료 및 행정비용	8,170	8,300	130

* 비만학생에 한하여 대사증후군 검사(허리둘레, 중성지방, HDL-Chol, LDL-Chol)추가
 -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은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중성지방
 측정 후 계산값 산출(검진비용 제외)

2026년 학생 건강검진 단가표

(단위: 원)

검 사 항 목	초1,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1학년	4학년		정상	비만	남학생		여학생			
		정상	비만			정상	비만	정상	비만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9,820	9,820	9,820	9,820	9,820	9,820	9,820	9,820	9,820	9,820	
- 진찰 및 상담											
- 척추형태(척추측만증 검사)											
- 눈(시력, 안질환)											
- 귀(청력, 귓병)											
- 콧병, 목병, 피부병											
- 신장, 체중, 비만도(BMI)											
- 허리둘레(비만학생에 한함)											
- 혈압측정											
- 결과통보 등											
2. 구강검진(치아 및 구강상태)	8,300	8,300	8,300	8,300	8,300	8,300	8,300	8,300	8,300	8,300	
3. 요검사(요단백, 요잠혈)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4. 혈액검사	미 실시	미 실시	20,480	미 실시	20,480	미 실시	20,480	미 실시	20,480	미 실시	20,480
-비만 : 혈당, AST, ALT,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계산값)											
- 고1(여) : 혈액소										1,270	1,270
6. 결핵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 촬영, 판독, 재료대 포함	직 촬	14"×14"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9,720	9,720	9,720	9,720	9,720	9,720
		14"×17"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10,040	10,040	10,040	10,040	10,040	10,040
		CR or DR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8,300	8,300	8,300	8,300	8,300	8,300
		Full PACS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9,270	9,270	9,270	9,270	9,270	9,270
금액 합계	14"×14"	19,060	19,060	39,540	28,780	49,260	28,780	49,260	30,050	50,530	
	14"×17"				29,100	49,580	29,100	49,580	30,370	50,850	
	CR or DR				27,360	47,840	27,360	47,840	28,630	49,110	
	Full PACS				28,330	48,810	28,330	48,810	29,600	50,080	

- * 초4학년 구강검진은 경기도청 주관 ‘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 가능(학생건강검진 비용 제외)
- * 혈액검사(비만학생): 혈당,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 및 간 세 포효소(AST, ALT)
 -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은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측정 후 계산값 산출(검진 비용 제외) 단, 중성지방 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 검사(검사비용: 7,800원)
- * 비만: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백분위수 95이상인 경우
- * 중, 고등학교 1학년 결핵검사 비용은 검사방법에 따라 비용을 산정한 금액임
- *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구강, 혈액검사 비용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조사표 (초등학교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 교 명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호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다음 문항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라면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음료수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육류(소, 돼지, 닭고기 등)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우유, 유제품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과일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채소(김치 제외)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수면 및 신체활동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합니까?	예	아니오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6시간 이내 ③ 7-8시간	② 6-7시간 ④ 8시간 이상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④ 약간 살이 찐 편이다 ⑤ 매우 살이 찐 편이다
개인위생	밥을 먹기 전이나 밖에서 놀다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예	아니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예	아니오
안전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맨다.	예	아니오
	인라인스케이트·롤러블레이드·스케이트보드 또는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을 쓰고 보호대를 착용한다.	예	아니오
TV·인터넷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예	아니오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예	아니오
가정 및 학교생활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예	아니오
	돈을 빼앗는 친구가 있다.	예	아니오
	내 몸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다.	예	아니오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예	아니오
	우리 가족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	예	아니오
	자주 매를 맞는 편이다.	예	아니오
약물	위의 문제로 선생님의 상담이 필요하다.	예	아니오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	예	아니오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	예	아니오
정서	모든 것이 귀찮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예	아니오
	공부시간에 선생님께 자주 혼난다.	예	아니오
부모님란	귀하의 자녀가 만 5세 이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항상 뛰어다니거나 말을 많이 합니까? (1학년만)	예	아니오
	귀하의 자녀는 주의력이 없고 주의가 산만합니까?(1학년만)	예	아니오
고민이나 괴로운 일로 상담을 받고 싶다.		예	아니오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① 거의 꼭 먹음 ② 대체로 먹음 ③ 대체로 안 먹음 ④ 거의 안 먹음
살을 빼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경험 해본 일이 있습니까? (있는 대로 고르시오)	① 아무 것도 안 함 ② 식단을 조절한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으로 감량한다.

학생건강검사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생건강검진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학교 → 건강검진병원)
- * 위탁자: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학교)
- * 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건강검진병원)

○ ○ 학교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병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계약 시 고시번호가 최신인지 확인 필요)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건강검진 실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건강검진 진행을 위한 학생 개인정보 수집(이름, 주소, 연락처 등)
2. 학생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및 통계 자료 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

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수탁자

주 소 :

주 소 :

기관(병원)명 :

기관(병원)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학교실시용]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체 교육자료(예시)

○○학교

학생건강검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 교육일자:
- 교육장소:
- 교육대상(업체 직원)

연번	소속(업체명)	직급	성명	서명	비고
	○○ 병원				

- 교육내용: 위탁업체 개인정보 준수사항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점검 결과서 점검일: 20 . . .	수탁자		위탁자	
	기관(병원)명		학교명	
	담당자	(서명)	담당자 (점검자)	(서명)

연번	점검 내용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증빙자료 및 X 인 경우 개선계획 등)
1	위탁자의 개인정보 위탁업무 목적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가? - 위탁업무 목적: - 취급하는 개인정보 항목:		
2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재위탁을 실시하지 않는가?		
3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		/교육일자: 2025.1.3./
4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고시 제4조] /1만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 개인·단체의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생략 가능/		/2024.1.5. 수립/
5	위탁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에 대한 권한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는가? [고시 제5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권한부여현황 확인완료/
6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고시 제6조]		/설치프로그램 확인완료/
7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일시적 또는 계속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하여 보관하는가? [고시 제7조, 제12조]		/파일암호화 완료/
8	개인정보 접근 및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고시 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접속기록 1년이상보관 및 월 1회 점검 확인완료/
9	악성프로그램 감염, 외부의 해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고시 제9조]		/백신소프트웨어 확인완료(최신업데이트, 자동검사확인필요)/
10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 하는가? [고시 제10조]		/자문인식, 비밀번호 등을 통한 출입통제/ /통제구역 출입통제대상 비치 및 기록/
11	개인정보 출력·복사물(종이 인쇄물 및 외부 저장매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가? [고시 제12조] /출력물 및 외부저장매체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캐비닛 잠금장치 확인/
12	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안전하게 파기 하고 있는가? [고시 제13조] /점검당일 파기 대상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2025.1.3. 파기완료/
13	기타 점검사항		

